



미국장로교 동부한미노회

The Eastern Korean American Presbytery, PC (USA)

725 Grand Avenue, #203, Ridgefield, NJ 07657 (201) 313-0010 ekpcusa@gmail.com

2017년 12월 28일

동부한미노회로부터 필그림 교회 교인 여러분들에게,

이미 아시는 대로 2017년 12월 22일, 뉴저지 Bergen County Superior Court는 필그림교회의 소유권이 동부한미노회에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간단명료했습니다.

양춘길 목사와 전(前) 당회원들의 주장은, 교회건물은 교인들의 것이며 1천명의 교인이 청원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은, 양춘길 목사와 장로들이 지난 8월 13일 교단을 무단으로 탈퇴하고 교회건물을 점거한 것은, 미국장로교의 교단법과 뉴저지 비영리종교재단법(Title16)을 완전히 어겼다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오직 8월 13일 미국장로교의 관할권을 파기한 양춘길 목사와 그 장로들을 향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교인 여러분들에게 “3일 내로 교회에서 나가라”고 판결한 적이 없습니다.

아래 법원의 판결문의 일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전문은 노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It is on this 22nd day of December, 2017, ORDERED, as follows:

A. The Plaintiff, Administrative Commission appointed to serve at Pilgrim Church shall be given access and control of the real and personal assets of Pilgrim Church of New Jersey, Inc. as trustees of Pilgrim Church of New Jersey, Inc.

B. The Defendants, Paul Yang, John Baek, In Sung Yoon, Richard K.H. Lee, Jin Kim Dong, Dong Chung, Sung Soo Jung, Hojim Lee, Ki Young Ko, Anthony Kim, Steve Lim and Ryan Joo shall each, not later than three days from service of this Order upon them, deliver to Rev. Victor Moon, Chairman of the Administrative Commission, all keys, deeds, mortgages, notes, business records, accounts, books, records, files, bank statements, statements of account, deeds, titles, correspondence, computer passwords, administrator codes and passwords for all assets and accounts of Pilgrim Church of New Jersey, Inc., keeping no copies whatsoever.

I. 불필요했던 12월 24일 공동의회

미국의 비영리종교재단법은 비단 미국장로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단의 경우 교회부동산은 교단 소유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남부 Polish Catholic Church (2017.12.5)의 경우나 북부 Alpine 감리교회(2017년 12월 19일), 혹은 펜실베이니아 리하이벨리의 베들레헴 교회 등, 최근의 경우만 보더라도 미국의 법원이 그렇게 판결합니다.

미국의 법과 법원의 판결들을 생각해 보면, 지난 12 월 24 일에 소송 중단 여부에 대한 공동의회는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양춘길 목사는 공동의회가 결정하거나 하지 않거나 간에 그 결과는 패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동의회를 해서 소송 중단 운운하며 '3 일 내로 전부 교회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자체가, 양춘길 목사와 당회원들이 얼마나 교인 여러분들을 자기들의 뜻대로 선동하는 것인지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노회는 여러 차례 바른 사실을 알리고 지도하려 하였으나, 양춘길 목사와 당회원들은 바르게 전달하지 않았고, 교인 여러분들도 노회의 지도를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춘길 목사와 당회원들이 극렬하게 비판하는 것처럼 미국장로교와 동부한미노회가 과연 그렇게 비성경적이고 무법한 집단인지, 관심도 두지 않고 비난에만 동참해왔습니다.

가슴아픈 것은, 양춘길 목사와 당회원들은 그런 것을 알면서도, 겉으로는 마치 노회의 GDP (Gracious Dismissal Policy)를 지키는 듯이 행동하고, 반대로 교인들에게는 잘못된 정보로 선동하고 지난 수 년간 언론을 이용하여 노회를 공격하는 등, 미국 장로교의 법적 질서를 파괴하면서 교회 건물을 소유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II. 노회의 노력과 왜곡된 현실

노회는 사회의 법원 혹은 경찰과 같은 공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무리 법을 어겨도 노회는 교단이 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회는 냉정해 보이고 교회를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명령만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뉴욕 뉴저지 교계의 여론은 양춘길 목사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노회의 입장과 법적 기준이 어떠한지 이해하려거나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오히려 노회가 성경적인 믿음을 지키려는 양춘길 목사와 당회원들로부터 교회 건물을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하고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노회는 그동안 양춘길 목사에게 무수히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리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양춘길 목사와 당회가 대회와 총회의 재판국에 노회를 기소할 때도 노회는 묵묵히 그 모든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서로 간에 언론을 이용하여 반목을 시도하는 일은 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바로 그 다음날 미국장로교에 대한 비난의 글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양춘길 목사는 번번이 모든 일을 뒤집고 거짓말로 노회를 비난하였습니다.

노회는 양춘길 목사에게 '교회 건물을 소유하여 교단을 떠나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노회원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으나, 정작 노회의 결정은 노회원들의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노회는 양춘길 목사에게 어떤 약속을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교단탈퇴의 부결이었습니다.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인 여러분들 앞에서 양자가 함께 공청회를 하고 싶기까지 한 마음입니다.

III. 목사와 장로들에게 요구되는 겸손

또한, 아무리 큰 교회와 그 교회 담임목사라도 절대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교회도 하나의 교회이고, 그 교회 담임목사도 한 사람의 목회자라는 겸손입니다. 그러나 양춘길 목사와 당회원들은 처음부터 언론을 통해서 교단과

노회를 거짓되게 비판했습니다. 필그림교회 같은 큰 교회가 교단을 떠나면 노회 소속 교회들이 줄줄이 탈퇴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거나, 노회의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도 겸손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특히 김 모 장로 등은 오히려 노회를 파괴하겠다는 위협까지 가하는 지경이었고, 노회의 모든 교회들이 합쳐도 필그림교회 하나만 못하다고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교회만 생각하여 수많은 비난을 언론에 배포함으로 인하여, 같은 노회에서 함께 동역했던 수많은 교회들과 수 천명의 교인들은 크나큰 믿음의 상처를 입었고, 동료 목회자들은 목회적 고통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양춘길 목사와 당회원들은 교회의 법은 전혀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양춘길 목사와 당회원들은 노회가 명령한 ‘특별행정검토’는커녕 상임사법위원회의 판결조차 따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적 진리는 그렇게 외치면서 왜 그렇게 교단법은 무시하고 행동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양춘길 목사는 자신의 청원이 미국장로교의 대회와 총회의 재판국에서조차 기각되자, 드디어 8 월 13 일, 교단을 무단 탈퇴하기로 하고, 송동호 로펌을 통해 ‘교회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기 원하면 법정에 가라’ (you should consult with attorney and seek the intervention of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to obtain a court order…) 고 노회에 통보 하였습니다. 이것은 건물을 강제점거하겠다는 말인데, 이것을 두고 ‘독립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이없는 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양춘길 목사와 당회원들은 스스로 교회 건물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연연했기 때문에 대회와 총회의 재판국에까지 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 보다가 안되어서 교회건물을 두고 떠나는 것을 마치 ‘출애굽’으로 비유하는 것은 경악스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교회 건물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한 집행유예 (Stay of Enforcement)도 신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12 월 22 일 법원의 결정 직후 바로 이어서, 공동의회 직전에 집행유예를 신청했습니다.

RE: Eastern Korean Presbytery et al. v. Baek et al.
Docket No. BER-L-6402-17
Our File No.: CL-272-17-NJ

Dear Judge Farrington:

This firm represents the Defendants in the above-referenced matter. This letter-brief is submitted in support of Defendants’ Order to Show Cause seeking relief by way of a stay of the Court’s December 22, 2017 Order for Preliminary Injunction, pursuant to R. 2:9-5, pending Defendants’ motion for leave to appeal the Court’s Order to the Appellate Division.

한편으로는 교인 여러분들과 한인 사회에 마치 소송을 포기하고 건물을 놓고 떠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상소법원에 갈 준비를 하기 위해 집행유예를 신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12월 26일, 집행유예 신청에 대한 긴급재판이 열렸을 때, 양춘길 목사가 재판정에 배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IV. 최종적 권고

냉정히 따져 본다면, 지금까지 수년간 모든 일은 항상 양춘길 목사와 당회원들이 시작했고, 노회는 언제나 수용적이고 수동적이었습니다. 오히려 노회는 단 한 차례도 양춘길 목사를 징계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불법적인 일을 행할 때마다 그 일을 바로잡고자 했으나, 그것마저 무시당하였습니다.

동부한미노회는 이같은 사실을 진심으로 마음 아파합니다. 한때 노회의 목회위원장 및 대회장까지 역임한 목사가 이처럼 교단의 법을 어기며 교단을 업신여기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분명한 교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양춘길 목사의 행태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사회의 법을 어기면 안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교단에서 정한 법은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회개해야 합니다. 교단의 법을 경시하고 지키지 않음으로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양춘길 목사와 당회원들은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 진정한 ‘필그림’의 정신으로 교단을 떠나기 원했다면, 말 그대로 ‘선교적 교회’가 되겠다고 **대회 총회 재판국으로 가지 않고 훨씬 전에 건물에 대한 미련없이 교단을 떠나려고 했다**면, 교단과 노회는 그같은 ‘떠남’을 냉소적으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단에 남는 노회와 교회들을 존중히 여겨 비난하지 않고, 마음 깊은 겸손으로 노회 소속 목회자들을 대하고, 때마다 언론을 통해 노회를 공격하는 대신 작은 목소리로 서로 상의했다면, 오늘과 같은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필그림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노회에 대한 오해와 지도자들에 의해 빚어진 이 상처와 아픔이 어찌면 오랜 시간 우리 가운데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때로는 분쟁과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은 다시 함께 만나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진심어린 마음으로 권고합니다. 동부한미노회는 동성결혼이 비성경적임을 알고 우리의 신앙양심으로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미국장로교가 오히려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미국사회속에서 신앙의 선택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미국장로교의 참된 정신인 ‘신앙양심의 자유’를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필그림교회에서 다시 함께 예배드리기를 권고합니다.

만약 노회의 진심어린 권고를 받지 않고 미국장로교를 떠나기 원하신다면, 어디서든 언제든, 지금까지 짧지 않았던 갈등의 역사는 잊어버리고, 보다 더 나은 믿음의 행로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장로교 동부한미노회
필그림 행정전권위원회 위원장 문정선 목사

